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7
(1) 법률의 목적(안 제1조)	7
(2) 정의(안 제2조)	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9
(4)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금 지급 및 우선 지급, 지원금의 환수 및 이의신청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0
(5)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안 제9조)	14
(6)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10조)	16
(7) 실태조사(안 제11조)	19
(8) 용자 지원 등(안 제12조)	20
(9) 권한 등의 위임·위탁, 벌칙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24
(10) 시행일(안 부칙)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3.
3. 회부연월일 :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음

특히 광화문·종로·용산 등 집회·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음.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517만 원, 전체 매출 손실 규모는 약 35조 원에 이름. 평균 영업이익률 13.25%(소상공인실태조사)를 적용할 경우 총 영업이익 손실액이 약 4.6조 원으로 산정됐으며, 인건비·임차료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짐.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나, 2025년 추경 예산안과 중기부 지원 정책 어디에도 비상계엄 피해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음.

수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이에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2·3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조사기간: 2024.12.10.~12.12.)에 따르면, 조사대상(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의 46.9%(237명)가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음.¹⁾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1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현황조사’(조사기간: 2024.12.10.~12.13.)에 따르면,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의 26.3%(135개)로 나타났다.²⁾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 12월 12일에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조사기간: 2024.12.10.~12.12.)에 따르면, 조사대상(소상공인 1,630명)의 88.4%(1,441명)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89.2%는 사업체의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음.³⁾

이와 관련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2024년 12월 신용카드

1)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 2024.12.16.
2)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 2024.12.18.
3) 소상공인연합회 보도참조자료, “소상공인연합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4.12.12.

이용금액 감소 효과가 약 5,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⁴⁾되고,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대폭 하락⁵⁾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였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음.⁶⁾

이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⁷⁾가 있는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비상계엄 이후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

4) -계엄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 효과: $\Delta 1.21\%p$ (12월 약 $\Delta 5,670$ 억원)

* 여신금융협회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전업 8개 카드사 및 BC카드 회원사, NH농협카드 포함

2024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A)	2024년 1~11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B)	추정 계엄효과(B-A)
3.89%	5.10%	1.21%

$-5,670\text{억원} = (2023\text{년 } 12\text{월의 카드 이용금액 } 46.9\text{조원}) \times (5.10\% - 3.89\% = 1.21\%p)$

5) 2024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대비 12.3p 하락하였고(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4.12.24.), 202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전월대비 12.7p 하락하였음(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1월 전망 기업경기동향조사(BSI)”, 2024.12.26.).

6)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 자료집”, 2025.1.24.

7) 관련기사

-서울신문, “민주당,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과감한 경기진작 추경 필요””, 2025.4.3.
(URL: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4/03/20250403500064?wlog_tag3=naver)

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반법이 있는바,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계엄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현황 등 전체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해지원금 지급 및 융자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재정 소요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⁸⁾에서 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추가

8)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7.25.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지원금 규모 등은 실태조사 및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소비증진 시책의 성과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리고 제정안은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자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한정되고,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업체가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조문별 검토

(1)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2·3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⁹⁾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¹⁰⁾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써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하 생략)

감소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사실상의 영업 피해인 점을 감안하여 법문언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비상계엄”이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12.3 비상계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2·3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안 제4조는 제정안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인 제정안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일반법 사이에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4)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금 지급 및 우선 지급, 지원금의 환수 및 이의신청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5조(12·3비상계엄 피해지원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3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12·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우선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12·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3항,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지원금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 예방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¹⁾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6조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안 제9조에 따른 12.3 비상기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의 우선 지급에 대한 적절성 및 현실가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²⁾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 감소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사실상의 영업 피해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영업이 위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³⁾

그리고 우선 지급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액수가 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¹⁴⁾에 규정되는바, 제정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의2. (생략)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이하 생략)

13) 단, 중소기업부는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지 않고, 우선 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및 우선 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12·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①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12·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2·3비상계엄 피해지원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금 지급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우선 지급, 상환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매출액 감소율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의견청취 절차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⁵⁾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른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보상 심의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안 제10조는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의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과세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해당 정보를 심의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파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 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⁶⁾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특히, 과세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17)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공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18)에 따라 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심의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과세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실태조사(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¹⁹⁾을 감안할 때 입법례²⁰⁾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와 관련한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용자 지원 등(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용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관련 과세자료는 국세청이, 영업 인허가 등 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음.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제1항 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규정하고, 기금 관리자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²¹⁾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례²²⁾에서 유사하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12조제2항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에 따라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상

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영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환유에 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기존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에 추가하여 융자 지원의 근거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이하 생략)
-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권한 등의 위임·위탁, 벌칙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정안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3조는 제정안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14조는 안 제9조에 따른 12.3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²⁴⁾을 적

2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안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의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²⁵⁾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벌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²⁶⁾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제정안의 벌칙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시행일(안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 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